



사법 당국 웹사이트에서 응급상황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응급상황 평가

응급상황 평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메릴랜드주 법원과 소송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주 또는 카운티 법원의 서기에게 문의하세요.

메릴랜드주 사법 당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mdcourts.gov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임무는 법정 소송의 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는 공공 정보 제공 용도이며 법률 자문 용도가 아닙니다. 안내서는 예정이나 예고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복제는 정부 관련 공공 사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C-DC-013BRKO (12/2023) (TR 02/2024)

응급상황 평가란 무엇입니까?

응급상황 평가란 해당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응급상황 평가를 명령한 경우, 해당인은 법 집행관에 의해 근방의 응급 시설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는 해당인이 정신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건-일반 § § 10-620 내지 10-630).

응급상황 평가를 위한 청원은 언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응급상황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즉 해당인의 행동이나 기타 증상에 따라 해당인의 정신 기능에 명백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정신 질환에는 지적 장애가 포함되지 않음) 및
- 해당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이 위험한 경우.

누가 응급상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음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의사, 심리치료사, 임상사회복지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전문 카운셀러, 심리 및 정신건강 간호 분야의 임상 간호 전문가, 정신과 전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임상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해당인을 검사한 보건 담당관 또는 보건 담당관의 대리인
- 개인이나 개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한 평화 집행관/법 집행관, 또는
- 기타 이해관계인.

응급상황을 신청하는 방법

1 단계: 청원서 작성

- 법원 서기 사무실 또는 온라인(mdcourts.gov/forms)에서 **응급상황 평가를 위한 청원서 (CC-DC-013)**를 구합니다.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필수 정보 중 일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원을 고려하지 않거나 다시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청원서 제출

- 법원 영업 시간 중에 응급상황 평가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위치와 영업 시간은 사법부 웹사이트(mdcourts.gov/courtsdirectory)를 참조하십시오.

3 단계: 같은 일자에 심리 참석

- 판사가 평가를 신청한 해당인에게 정신 질환의 증상이 있고 해당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를 발견한 경우 판사는 응급상황 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인 개인은 청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거짓으로 청원을 신청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평가의 청원이 승인된 경우 어떻게 진행되니까?

법 집행관은 해당인을 찾은 후 평가를 위해 근방의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합니다. 해당인을 찾을 수 없으며 법원 명령 후 오(5) 일 이내에 응급실로 데려가지 못하면 명령은 종료됩니다. 명령이 종료된 후 해당인이 정신 질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해당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청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나 타인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고 현장을 벗어나십시오.

비자발적 입원 승인 절차

- 의사는 해당인이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응급 시설에 도착한 후 해당인 (피평가자라고도 함)을 육(6) 시간 이내에 평가해야 합니다.
- 피평가인은 30 시간 이상 응급 시설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검사 의사가 적절한 정신 건강 치료 시설에 해당인을 입원시킬 수 없는 경우, 의사는 메릴랜드 주 보건부에 통지합니다. 보건부는 통지 받은 후 육(6) 시간 이내에 입원을 시켜야 합니다.
-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되는 사람은 해당인이 비자발적 입원의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입원 후 십(10) 일 이내에 행정법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 증언을 듣기 위해 병원은 부모, 보호자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심리 시간, 일자,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인이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나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며, 해당인이 스스로 돌보거나 해당인을 돌볼 수 있으며 돌볼 의사가 있는 담당자에 의해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경우 입원 대상자는 퇴원 처리되어야 합니다.
- 해당인이 지속적인 비자발적 입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즉시 퇴원 조치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평가 청원과 관련된 법원 기록은 온라인 사건 검색 등을 통해 공개되니까?

정신 건강 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소환장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타당한 사유로 인해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리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은 법 집행과 같은 법원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원 대상자는 특정 상황에서 사건 기록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기록은 사법부의 사건 검색 공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Maryland Crisis Hotlines Resource Guide

Statewide	9-1-1 988 988 1-800-273-8255, press 1	Garrett	988 301-662-2255
Allegany	988 301-662-2255 240-964-1399	Howard	988 410-531-6677 (24/7)
Anne Arundel	988 410-768-5522 410-222-7273 410-222-6800	Mid-Shore (Caroline, Dorchester, Kent, Queen Anne's and Talbot Cos.)	988 1-888-407-8018 1-800-310-7273 410-749-HELP (-4357) 1-800-927-HOPE (-4673)
Baltimore City	988 410-433-5175	Montgomery	988 240-777-4000 301-738-2255
Baltimore County	988 410-931-2214	Prince George's	988 301-864-7130 240-429-2185
Calvert	988 1-877-467-5628	Saint Mary's	988
Carroll	988 410-952-9552, 9:00am-12:00am	Somerset	988 410-749-HELP (-4357) 1-888-407-8018
Cecil	988 410-749-HELP (-4357) 888-407-8018 410-996-0333 443-245-3257	Washington	988 301-662-2255
Charles	988	Wicomico	988 410-749-HELP (-4357) 1-888-407-8018
Frederick	988 301-662-2255	Worcester	988 410-749-HELP (-4357) 1-888-407-8018